#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8.

발 의 자: 강민국・金炳旭・김영식

서일준 • 윤창현 • 한무경

허은아 · 김석기 · 정동만

권명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.

그러나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,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37조제5항 및 제6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해양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(분실 등으로 재발급의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52조제2항제2호의2 중 "제37조제6항"을 "제37조제5항"으로, "안전검사증"을 "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"으로 한다.

제5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검사필증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여야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7조(안전검사) ① ~ ④ (현행 제37조(안전검사) ① ~ ④ (생 략) 과 같음)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 ⑤ 해양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 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 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 <u>는 제1항 및</u> 제2항에 따른 안 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, 시·도 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 전검사에 합격한 자(분실 등으 대행자(이하 이 조에서 "해양 로 재발급의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해양수산부령으 경찰청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 청하여야 한다. 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및 안전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 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수산 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 하여야 한다. 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부 착하여야 한다. 제52조(수수료) ① (생 략) 제52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, 시험대행기관 및 검 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2의2. <u>제37조제6항</u>에 따라 동력 수상레저기구 <u>안전검사증</u>을 재발급하는 경우
-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제59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③ ~ ⑦ (생 략)

,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<u>제37조제5항</u>
<u>안</u> 전검사증 및
<u> 안전검사필증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5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
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
 한 자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